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7 | 2025.06.09 (2025.05.26~2025.06.0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전문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성과가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로 직결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사업화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하는 등 「AI 팩토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25인)」,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 김현정의원 등 11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민형배의원 등 19인)**」 ,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21인)**」 ,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등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6월 10일 APEC 정상회의 지원특위에서 업무현안 진행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사업화 전략대화」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 「AI 팩토리」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 8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확정(금융위원회).....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산업통상자원부)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12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2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5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1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25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 김현정의원 등 11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18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2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4
•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4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5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 민형배의원 등 19인)	2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2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26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21인)	27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28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에너지·자원] 20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 [소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선고
- [방송통신(TMT)]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이 AI기본법상의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과 게임산업에의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5. 12. - 2025. 5. 27.)
- [에너지·자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금융]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와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이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출입 관련 규제 동향
- [국제상사중재] 중재비용의 구성과 분담
- [소송]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사업화 전략대화」 개최

- 15개 정보통신기술 산학연 기관들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 활성화 추진 방향 논의
-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첫걸음

2025-05-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전문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ICT R&D) 성과가 국가 미래성장동력 창출로 직결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사업화 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참석기관 : (산업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학계)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협의회, (연구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금융계) 한국초기투자엑셀러레이터협회, (간사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사이버보안, 6세대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은 심화되고 있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이자 주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만큼, 과기정통부는 주요 분야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음. 그러나, 세계 정보통신기술 시장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도입·확산되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생태계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금일 전략대화에서 향후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참석 기관들과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산업계 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및 후속지원 확대

- 응용·개발 연구개발은 산업 적용·활용을 목표로 하는 만큼 산업계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기획·평가 등 전 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 참여를 확대
-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상용화·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러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② 정보통신기술 출연연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선도

- 정보통신기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의 사업화 지향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의 연구개발 최종 목표도 상용화까지 확대
-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출연연과 산업계 간 접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 표준특허 확보, 기획형 창업 등 출연연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모형을 도입

③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강화

- 기술사업화 기업을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자 창업 등 기술사업화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 기금(펀드) 등을 통해 도전적 기술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 우수 연구개발 기업의 제품·해결책(솔루션)을 국내 판로개척 지원 사업과 정보통신기술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AI 팩토리」 본격 추진

- 기업수요 등 감안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전면 개편
- (양적 확대) 신규과제 기준 ‘24년 26개 → ’30년 100개 이상
- (사업 다각화)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 휴머노이드 연계 등
- (전문성 강화) 전문기업 지정,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2025-05-26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하는 등 「AI 팩토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됨

① 양적 확대

- AI가 새롭게 접목되는 연간 제조 현장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30년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들의 필수 생존전략인만큼 우선은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

② 사업의 다각화

- 지난해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의 소비자 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
-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단년으로 추진
- 올해부터는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하나의 공급망내에서 AI가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
- 지난 4.10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에 휴머노이드를 본격 투입하여 실증하는 사업도 첫 추진될 예정

③ 전문성 강화

- 지난해 산업부는 제조 AI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2개 업종, 153개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바 있음
- 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하고 AI 전문기업 등을 얼라이언스에 포함시켜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

- 앞으로 이들은 얼라이언스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 수행, 기존과제 점검, 제조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등에 참여
-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든 제조현장에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파운데이션 모델은 개별 사업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생지원·전자연 등 전문연구기관들과 전문기업 등이 함께 개발
- 빠르면 '27년부터 개발중인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를 제조 기업들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들이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한편, 금년에 추진될 4가지 AI 팩토리 사업들은(대규모/미니/대중소 협력/휴머노이드) 각 사업별로 5월 말~6월 초에 사업공고를 시작해, 6~7월 중 과제가 최종 선정될 계획임. 산업부는 지난해 대비 사업이 다각화되었고 기업 수요가 여전히 높은만큼 당초 25개(지난해 26개) 내외로 선정하려던 과제수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확정

-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
-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
-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 비교설명 제도 구축
- (규제 집행력 강화) 1,200% 규칙*을 보험대리점 설계사 개인별로 적용하고, 최적사업비를 초과하는 수수료 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2025-06-02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24.12월)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을 확정하였음.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20.1월~)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음

다만, IFRS17 도입('23.1월~)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으며, 금융위 · 금감원 · 보험업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수 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왔음. 판매수수료 개편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보험회사와 영업 현장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정부·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 결과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의 공개 설명회('25.3.31일, 4.30일)를 거쳐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25.5.23일 보험업계 간담회)하게 되었음

금융위원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힘. 6월초에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임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임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임. 이를 위해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계약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가능성 등)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임. 또한,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정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의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고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기술 이전을 촉진함

산업통상자원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	----------------------------	------------------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	---	------------------

수소사업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수소유통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025-08-28 시행 예정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제재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재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중소기업부고시에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개발·공급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 등을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재무 상황, 자금조달계획, 추진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제2조 및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 ④ 부동산개발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2025-11-28 시행 예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보고·공시 및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04 시행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총회의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및 12. 4.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진단의 요청인에게 통보하는 사항과 통보 기간을 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정하며, 전자서명동의서를 동의서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요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비구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복리시설의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02 시행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만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02 시행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여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에는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02 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조각투자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및 주권비상장법인 우회상장 심사 범위를 각각 확대하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채증권 등에 대한 장외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2025년 3월 4일 출범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중개할 수 있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29. ~2025.07.08.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 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및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
- ②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 의 업무제휴 방식으로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tel:044-215-4731)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25.05.27. ~2025.07.07.
-------	--------------------------------------	-----------------------------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자 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전화: 044-205-4518, 팩스: 044-205-8932\)](tel:044-205-451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5.27. ~2025.07.07.
-------	------------------	-----------------------------

25.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으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육아휴직 급여(이하 ‘특례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적용 근로자들의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 위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412, 팩스: 044-202-8054\)](tel:044-202-74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25인)

2025-06-05 발의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위와 같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안 제364조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김현정의원 등 11인)

2025-06-02 발의

현행법은 주식등을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경우 및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1%p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 상황, 보유 목적 또는 변동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소수주주들 역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기업 경영 감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대량보유보고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함으로써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안 제147조제1항 및 제150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5-06-04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모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와 달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차입 제한 등의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순자산액의 4배 한도 내에서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리한 차입, 특히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한 LBO(Leveraged Buyout, 차입인수) 방식의 과도한 차입이 인수대상 기업에게 막대한 이자 비용 부담을 안기고 자산의 매각, 재무구조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상 기업을 파산위험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통한 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한도를 축소하고 내부거래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자산거래 발생의 경우 이해상충 여부와 그 통제 수단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6)**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2025-06-05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5-28 제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 (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3조)**

-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② **상속세 납부의무자 변경 (안 제3조의2)**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해당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 (안 제10조의2 신설)**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하도록 함

④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상속공제 개편 (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 상속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함
-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은 5억원, 그 외의 상속인은 2억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수유자는 5천만원, 그 외의 수유자는 1천만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

⑤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안 제27조의2 신설)**

-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⑥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한 신설 (안 제67조)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되,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 등 및 「민법」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5-06-02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 경영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며,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5-06-02 발의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기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5-06-04 발의

최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다수 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안전설비 미비,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설비 투자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음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6 신설)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025-05-28 발의

현행법은 초·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2025-05-26 발의

지난 2009년 11월과 2011년 3월 이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은 국내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들의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 결제’라는 명목의 높은 독점가격인 30%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 징수하여 왔음

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들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형식상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임

반면,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11일 연방법원 배심평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미국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위반이라고 사실 확정하였고,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4년 4월 11일)에서 구글의 내부분서를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강제 결합행위가 없었다면 기껏 최대 1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드러났으나, 국내 앱 마켓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약 5배에 달하는 부당한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의 국내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영업상 보복적 수단으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더라도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실의 신고 또는 제5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이유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 및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가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등 위반행위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신고인 또는 해당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22조의9 등)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사업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1인)

2025-05-2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5-05-29 발의

현행법은 음란정보, 명예훼손 정보 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 또는 유포하여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5-05-30 발의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025-05-28 발의

정부는 최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국가유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산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주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연구와 함께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2025-05-28 발의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등 문화유산 보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규제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규제 완화나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문화유산 주변 개발 제한과 관련한 규제 절차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주민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법령의 계획 체계에는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전략적 평가, 보고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화유산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제1조 목적 조항을 개정하고, 규제의 비례성과 합리적 운용을 명시한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비하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 조사연구, 규제 미이행 시 주민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 1조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 민형배의원 등
19인)

2025-05-29 발의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정기준의 불명확성, 지원방식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지속가능관광은 단순한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 재생, 환경보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이므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관광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 지정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 20912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4호 신설 및 제48조의14부터 제48조의16까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2025-05-29 발의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
인)**

2025-05-26 발의

최근 낙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낙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낙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낙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낙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낙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낙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낙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낙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낙시진흥기본계획에 낙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낙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낙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낙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시 문화 조성 및 낙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낙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제44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21인)

2025-05-27 발의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자국 내 기업 투자와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 및 국가 간 관세 장벽 조치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추가적인 인력 및 자본의 투입은 기업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3년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1.0%, 매출액의 44.2%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0%에 달하며 중소기업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이 필수적임

이에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2025-05-28 발의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제6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5-06-02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9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2025-05-27 발의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인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음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제한이 없는 상황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종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역차별 문제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국민들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여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025-05-30 발의

현행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 거짓언행, 명의 대여 등 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민원이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세사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업무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에 이 법에 따른 고용인 미신고, 표시·광고 명시위반 등 행위 및 임대차 계약의 허위신고 등을 추가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2)**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APEC 정상회의 지원특위	전체회의	6/10(화) 14:00	- 업무현안 진행 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9(월) 14:30	의료개혁 추진과 혁신적 재활의료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한지아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6/10(화) 13:30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서해안 HVDC 사업을 중심으로	김성환·이언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1(수) 10:00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1(수) 14:00	국가 AI 인프라의 미래, 경북과 포항의 전략적 가능성 : 경상북도 AI 공공인프라 전략토론회	김정재·이상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11(수) 14:00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본 법·제도적 과제	서왕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6/12(목) 14:00	새로운 대한민국! 2025 콘텐츠미래포럼 : K-콘텐츠와 스포츠 미디어 산업의 미래	박수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6/9(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2호(2025-12호) 발간	국회도서관	
	6/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3호(2025-10호) 발간		
	6/11(수)	「금주의 서평」 제732호(2025-23호) 발간		
	6/12(목)	「NABO Focus」 제11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5/2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2호(2025-9호)	국회도서관	
	5/28(수)	「금주의 서평」 제730호(2025-21호)		
	5/26(월)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2호	국회예산정책처	
	5/27(화)	「NABO Focus」 제110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26(월)	에너지·자원	2025년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
5/28(수)	소송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선고
5/29(목)	방송통신(TMT)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이 AI기본법상의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과 게임산업에의 시사점
5/30(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5. 12. - 2025. 5. 27.)
6/2(월)	에너지·자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6/4(수)	금융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액이 상장법인보다 큰 경우와 총주주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이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6/4(수)	러시아	러시아의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출입 관련 규제 동향
6/5(목)	국제상사중재	중재비용의 구성과 분담
6/5(목)	소송	기업인수 전 경영진의 부당한 보수 수령 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